

2025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협업프로젝트] 「고성군 조선산업 레벨업 & 지속성장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3차)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 고성군의 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고성군)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고성군 소재 조선업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고성군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고성군 조선업 기업의 생산기반 고효율화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속성장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 사업내용

- (사업명) 고성군 조선산업 레벨업 & 지속성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중소기업
※ 고성군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1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년 11월
- (지원내용) 고성군 조선산업의 공정자동화 및 생산장비 자동화, 생산 관리시스템 및 자재관리 스마트화 구축 지원,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지원,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지원

□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기업당 지원금액 (최대기준)	전체 지원 기업수	기업당 자부담율 (지원금액 대비)
혁신화 & 성장촉진	공정혁신 컨설팅	- 조선업 생산·자재·관리·품질 등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공정 혁신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솔루션 도출 지원	5백만원	6개사	10%
생산성 향상	생산공정 자동화	- 조선업 생산·자재·관리·품질 등 모든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구축 지원 - 각종 로봇 등 자동화 기술 구축 및 자동화 장비, 센서, 제어기 등 장비 구축 지원 -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성능 업그레이드, ICT 기술 추가 지원 - 노후 생산 장비 및 공정 개선 지원	30백만원	2개사	50%
사업화 지원	시험인증 지원	- 조선 기자재 각종 선급인증, 시험인증, 국제규격 취득 지원	10백만원	2개사	10%
외국인 채용지원	외국인 우수인력 채용지원	- 외국인 기량 검증 및 인력 채용을 위한 각종 경비 지원 및 현지 채용 박람회 참가 지원 - 외국인 채용 관련 기업체 인원 국외 출장비 및 체류비 지원	3백만원	3개사	10%
	지침서 번역지원	- 외국인 생산인력 신속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지침서, 안내서 번역 지원 - 의사소통 문제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침 및 안내서, 안전표지판 번역 및 제작 지원	1.5백만원	4개사	10%

※ 생산성 향상 또는 사업화지원 신청 기업이 외국인력 채용지원 동시 신청시 우대

※ 지원 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 (지원 금액) 상기 표의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 및 자부담 참조

- *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50% 기업 자부담 매칭 필수
- * 예시 : 지원금 25백만원 + 기업부담금(10%) 2.5백만원 = 총 사업비 27.5백만원
- * 영세기업의 기업부담금 완화를 위해 '23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은 5%, 10억원 이상은 10% 자부담 매칭
- * 단,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은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 금액의 50% 기업 자부담임
- * 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

ex) 지원금이 30,000천원일 경우 예시

※ 기업 자부담+부가세(B+C): 4,200천원

(단위: 천원)

경남TP 지원금	기업 자부담	합계	(지원금+자부담)의 부가세	총합
A	B	A+B	C	A+B+C
30,000	3,000	33,000	3,300	36,300

수행주체	수행내역	금액(예시)
① 공급기업 → 수혜기업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36,300천원
② 수혜기업 → 공급기업	자부담+부가세 입금	6,300천원
③ 수혜기업 → 경남TP	총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자부담+부가세 입금증, 결과보고서 제출	-
④ 경남TP → 공급기업	지원금 이체	30,000천원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수행기관 → 수혜기업) 또는 간접지원(수행기관 → 공급기업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3

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이 고성군 내에 소재하는 조선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 ※공고 마감일 기준

* 사전제외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① 고성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하지 않는 경우
- ② 부도,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경우
-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 된 경우
- ④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지를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 ⑤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
- ⑥ 신청과제의 내용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4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SMIECH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ch.go.kr/region/rms>
 - ※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 불가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6. 23.(월) ~ 2025. 7. 25.(금)
 - (제출서류)

구 분	순 번	제출서류	비 고
필수	1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2-서식1
	2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등	첨부3-서식2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3-서식3
	4	중복지원 금지사항 약속서	첨부3-서식4
	5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첨부3-서식5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최근 3년간('21년 ~ '23년) 기업 재무제표 ※ 창업 3년 미만 기업: 해당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택	9	우대가점 증빙서류(우대기준 참조)	

□ **선정 방법**

- (사전검토) 중복수혜, 사업참여제한 등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최종 확인

* 사전제외대상: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기업의 역량 점검을 목적으로 신청기업의 실체 등 사실 확인 중심으로 실시
 - 2인 내외의 해당 산업분야 전문가와 담당자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현장, 서면 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구분	점검방식	수행주체
현장실태조사 (대면)	신청기업 방문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기업지원 수행역량 등 확인	평가위원 및 담당자
서면실태조사 (비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신청서 등) 및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조직도, 구성원 현황 등)를 별도 제출받아 확인	
면담조사 (대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신청서 등) 및 대면 질의응답(대표자, 사업책임자 등)을 통해 확인	

- (평가위원회) 5인 이상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로 기업 사업수행계획 발표평가 진행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

항목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적절성	20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내용의 타당성 (35)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25
	○ 지원 신청 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 (25)	○ 사업 수행시 기대 효과(정성적)	15
	○ 고용 및 매출 증대	10

- 아래 표에 해당시, 수혜기업 우대가점 반영(최대 3점 인정)

연번	우대가점 기준(안)	증빙서류	가점
1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지역산업진흥원 확인	3
2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기업	인증서	1
3	•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장수기업	인증서	2
4	• 원산지인증수출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1
5	• 위기지역 중소기업*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주관기관 확인	2
6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 *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기업간 협업 및 공동성장 활성화 일환)	컨소시엄 유무	1
7	• 최근 3년간(2022년~24년) 지역특화비자(F-2-R) 외국인 채용기업	채용관련 증빙자료 및 비자관련 자료	2
8	• 외국인 채용지원 프로그램 신청기업 (생산성 향상, 사업화 지원 지원 부문 가점)	지원기업 신청서	1

※ 우대가점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 (결과통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홈페이지 內 선정 결과통보

5 추진일정



-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 실적, 성과 등 결과물은 협약서에 기재된 기한까지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수행과제에 대한 달성 여부 평가를 진행하고,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업비 지급
 - * 평가기준: 우수,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여 달성 여부 평가
 -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사업목표달성 여부를 평가 후 지원금 지급
- (성과조사) 사업 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와 관리 실시 예정
 - 과제종료 후, 수혜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발생한 매출, 고용, 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6 유의사항

-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 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업부담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必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제수행 중 또는 과제종료 후라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공개되지 않음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사업참여에 제한됨

7 관련 법령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8**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소 속	담 당 자	연락처	이메일
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손혁성 선임연구원	055-670-6615	son50777@gntp.or.kr

○ SMTECH 및 RMS 관련 문의

구 분	담당기관	연락처
SMTECH 회원/등록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공급기업 등록 문의		

9**첨부문서**

1. (첨부1) 신청서 및 계획서(양식) 1부
2. (첨부2) 동의서 양식 1부